

제171회 거창군의회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17건)

거창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0 ~ 57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
2010 ~ 58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15
2010 ~ 59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3
2010 ~ 60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29
2010 ~ 61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35
2010 ~ 62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43
2010 ~ 63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2010 ~ 64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0 ~ 65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69
2010 ~ 66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5
2010 ~ 67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7
2010 ~ 68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7
2010 ~ 69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2010 ~ 70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1
2010 ~ 71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5
2010 ~ 72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141
2010 ~ 73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5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57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의 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전부 개정에 따른 운영절차의 개선과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군민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 제도를 통합·개선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한 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 실시제안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를 모든 국민과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안의 제출방법과 제안의 접수 및 보완,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라.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기간과 채택 여부 결정사실의 통지, 제안의 심사기준, 불채택제안에 대한 재심사 요청 등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과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부서별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우수제안의 등급을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하고,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된 제안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안에 대한 시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아. 채택제안 실시에 따른 제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지급방법,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직무발명 또는 직무고안이거나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의 그 권리의 승계 등 제안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 자. 채택제안 및 불채택제안의 관리기간과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 차.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준용, 조례의 세부시행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을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확보(10,8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2.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군의 시책 반영 또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군수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바.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3조(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접수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보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의 심사

제8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③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드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든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관련부서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담당주사 및 업무담당자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10조에 따른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창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2.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3.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1조(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및 장려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표창하거나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2. 우수 : 1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3. 장려 :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② 제1항 따른 시상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 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한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17조(시상시기) 시상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9조(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0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0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 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제안처리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13조제1항 관련)

제안등급	인사상 특전의 종류	비 고
최우수	특별승급 1호봉	
우수 장 려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 부여	

- ※ 비고 : 1. 2명의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등급이 최우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2. 3명 이상의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상여금 지급 기준표(제15조제2항 관련)

지 급 대 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 × 100분의 3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 = (예산절감액-1,000만원) × 100분의 20 + 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 = (예산절감액-1억원) × 100분의 10 + 2,100만원
지방재정수입 증대		지방재정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지급
행정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 등급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우 등급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미 등급 : 500만원 미만

※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 최고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58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의 신고의무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방법 및 처리기간을 정함(안 제4조).
- 라. 감사부서 직원은 신고의 접수,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분상 불이익 시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바.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 문책 등 신고자의 신분보호 장치를 규정함(안 제7조).
- 사. 피신고자가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보복행위 시 사실조사를 통해 징계조치 등 보복행위 금지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아.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자. 거짓신고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여 거짓신고를 예방토록 함(안 제10조).

차.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안 제11조).

- 지급방법 :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
- 지급 상한액 : 2천만원

카.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12조).

타. 포상금을 지급한 후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환수 근거를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1년 당초예산 확보(20,000천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1. 1. ~ 11. 2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사항의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및 일반군민(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군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신고창구,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이나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의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기간에는 다음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 감사, 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걸리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기간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거짓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盜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산정된 포상금은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지급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따라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기 준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나’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20% 이내
조례 제2조제2호 ‘다’목 관련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20배 이내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59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게 하고, 그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근거 등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와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함

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의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 간사,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수당, 운영세칙 등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1,76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10. 6. ~ 10. 2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거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3.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아동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0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아동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의 역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위원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나. 아동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활동 등 그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아동위원회는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등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함

다.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을 정함(안 제9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에 반영(14,18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9. 14. ~ 10. 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아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거창군 아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거창군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읍·면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그 관할구역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및 후원자 결연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6.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아동위원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아동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아동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아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아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필요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아동위원증) 군수는 아동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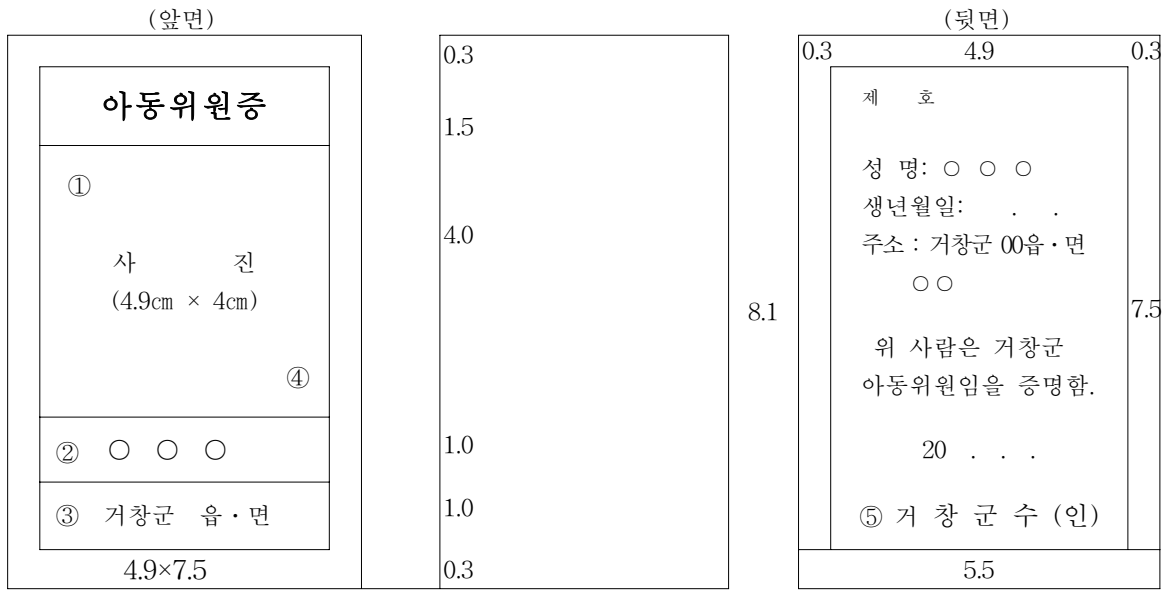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아동위원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별표]

아동위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9조 관련)

(단위 : cm)



- (비고) 1. 아동위원증의 색상 및 재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m²으로 한다.
 2.. 아동위원증의 ① ~ ⑤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성명
 - ③ 소속기관명
 - ④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1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군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의 구성원인 손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로 하되, 손자녀가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
-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하되, 65세 미만이라도 조부모가 3개월 이상 무직이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제1계층(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세대)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학습지원, 성장지원
- 제2계층(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학습지원, 성장지원

라.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과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조손가정 지원사업은 예산사업(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학습지원, 성장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도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 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함

마.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실조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지원내용을 알려 신청을 권고할 수 있음

○ 군수는 지원신청이 있으면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

바. 조손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확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군수는 조손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되, 비예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지정기탁을 권고할 수 있음

사. 조손가정 지원사업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조손가정수당(세대당 월 5만원)과 명절위로금(세대당 20만원, 설·추석명절 연 2회)은 지원대상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되, 다른 사업으로 현금지원이 추가될 때에는 이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학습지원 및 성장지원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함

아. 지원대상자의 명단 및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의 보고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의 수립 및 소득 등 변동사항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자.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중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거나 세대구성원의 변동으로 요건을 상실한 경우, 연령 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7호,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48,0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8. ~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그 세대의 구성원인 손자녀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외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그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1계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이거나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가정 아동양육비, 가정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 세대별 공적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세대

나. 제2계층 :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2.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대 단위의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명절위로금”이란 조손가정에 대하여 설·추석명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세대 단위의 지원금을 말한다.

4. “학습지원”이란 조손가정 손자녀에게 공평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학습을 돕는 사람의 파견, 방과 후 학습의 연계, 학습지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지원”이란 조손가정 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 제공 등의 인적·물적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조손가정으로서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손자녀가 18세 이상 이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조부모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부모가 65세 미만 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한다.

1. 조부모가 일정한 소득없이 3개월 이상 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2. 조부모가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군수가 확인한 경우

제4조(지원내용) ① 제2조제1호의 구분에 따른 조손가정의 계층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계층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학습지원, 성장지원
2. 제2계층 : 학습지원, 성장지원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가출·실직 또는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생활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구분) ① 군수는 조손가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예산 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예산사업에 대하여도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명절위로금
2. 비예산사업 : 학습지원, 성장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 사정과 다른 제도에 따른 급여의 내용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 등을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을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조손가정에 지원내용을 알리게 하고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조손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호에 따른 비예산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에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실시) ① 조손가정수당은 세대당 월 5만원으로 하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명절위로금은 세대당 20만원으로 하며, 설·추석명절 전에 지급한다.

③ 조손가정수당 및 명절위로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으로 현금 지원이 추가될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학습지원 및 성장지원 등 인적·물적서비스의 지원은 사실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되, 인적서비스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물적서비스는 지원사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지원한다.

⑤ 조손가정수당과 명절위로금은 지원대상자 개인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10조(보고 및 점검) ① 조손가정업무 부서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과 함께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손가정업무 부서의 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변동사항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조손가정으로 지원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세대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의 연령 초과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5.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2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적 존경과 애도의 뜻을 표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군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함(안 제2조).

나. 군민장은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나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함(안 제3조).

다. 군민장 대상자의 결정 방법 및 그 대상자 결정을 위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군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및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 그 밖에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간사 및 서기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군민장장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

라.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군민장장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위원회의 관장사항

-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은 도의원, 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필요한 수를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봄

○ 고문 :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함

○ 집행위원

- 위원회의 직무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두되,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각각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 간사 및 서기는 각각 군민장업무 담당과장과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됨

마. 장의 공고, 장의 기간 및 군민장 소요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명의로 신문이나 군 공보·홈페이지 등에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의 범위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바.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 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토록 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 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7. ~ 11.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민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장의 범위) 거창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제3조(군민장 대상자)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의 명예를 빛낸 사람

제4조(대상자 결정 등) ① 군민장 대상자는 군민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거창군의회회장의 제청으로 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단체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장의위원회의 설치) 군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민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국회의원, 거창군의회의원, 학계, 언론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장의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명의 집행위원을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과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민장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장의 공고) 군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신문이나 군 공보·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4조(장의 기간) 군민장의 장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의 범위에서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비용의 부담)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장·국민장의 장례 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제지원기준(제15조 관련)

사항별	규격	수량	비고
신문 광고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분향소 및 영결식장 설치		1식	
영구차	중형	2대 이하	1일간
헌화용 꽃, 근조리본 등	백색국화(헌화용) 근조리본 흰색 장갑 영구차 리본	1000송이 이내 필요량 필요량 2개 이내	
조화	3단 생화	1개	장의위원장명의
안내문	모조 32절 180g/m ²	1,000부 이내	
현수막	게시대용	읍게시대 10매이내 면게시대 각 1매	
기타	영결식 기자재 등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3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선도적 자치단체로 도약하기 위하여 행정 수요에 맞게 실과단 및 사업소 조직을 신설·폐지·분리·변경하고, 사무를 분장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과단 및 사업소 신설·폐지·분리하고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 신 설 : 창조정책과
- 폐 지 : 1010추진단, 수송대관광지관리사무소
- 분 리 : 산림환경과 →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 변 경 : 건설과 → 건설교통과

나. 부서장의 사무를 분장 및 조정함(안 제3조, 제7조).

- 창조정책과장
 - 사무분장 : 교육, 창조도시 전략 및 사업, 인구, 승강기산업, 자전거 업무
- 재무과장
 - 사무인수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 민원봉사과장
 - 사무이관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
- 경제과장
 - 사무신설·인수: 사회적기업,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업무
 - 사무이관 : 교통행정 및 운수 업무
- 산림녹지과장
 - 사무신설·인수 : 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 업무
 - 사무이관 : 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업무
- 녹색환경과장
 - 사무신설·인수 : 환경관리, 환경정비, 수질관리, 녹색성장 업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 사무신설 : 농기계 임대서비스 및 귀농인 지원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가 소요액 79,777,590원(기구 및 정원조정)

다. 그 밖 에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2010. 10. 25. ~ 11. 14.)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1010추진단을”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라목을 삭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5호)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및 제8호(중전의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환경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8호) 라목 중 “환경관리보존 및 환경정책”을 “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으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8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8호) 사목을 마목으로 한다.

4. 창조정책과장

- 가.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창조도시 전략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다.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라.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 마. 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
- 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

7. 경제과장

- 가. 사회적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다.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라. 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 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8. 문화관광과장

- 가.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사항
- 나. 관광 및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항
- 다.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라.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마. 수송대관광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바.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9호) 가목 중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를 “건설행정”으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9호) 나목을 다목으로, 다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9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녹색환경과장

가. 환경관리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나. 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라. 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리.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귀농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제4절(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1010추진단”을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를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로 한다.

② 거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③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④ 거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⑤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민생활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⑥ 거창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주민생활담당주사”를 “기초생활담당주사”로 한다.

⑦ 거창군 범군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대외협력 업무담당 주사”를 “주민자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⑧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⑨ 거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봉사과장, 재무·도시건축과장”을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동산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⑩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주사”를 “교통 담당주사”로 한다.
- ⑪ 거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⑫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림환경과장”을 각각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
- ⑬ 거창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정과장,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을 “농축산과장, 산림 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농정과장, 산림환경과장”을 “농축산과장, 녹색환경 과장”으로 한다.
- ⑮ 거창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중 “산림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
- ⑯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⑰ 거창군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건설행정담당주사”를 “건설 담당주사”로 한다.
- ⑱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①⑨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본문 중 “산림환경과장, 건설과장”을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 ②⑩ 거창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1010추진단의 교육지원담당”을 “창조정책과의 교육진흥담당주사”로 한다.
- ②⑪ 거창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 ②⑫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산림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 중 “1010추진단”을 각각 “창조정책과”로 한다.
- ②⑬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 1010추진단장”을 “창조정책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 ②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 및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②⑮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1010추진단장”을 “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유치담당주사”를 “투자유치담당주사”로 한다.
- ②⑯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과장, 농업지원과장, 원예특작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업소득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 ②⑰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산림환경과”를 “산림녹지과”로 한다.
- ②⑱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 ②⑲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u>실·과·단장</u>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u>실·과·단</u> 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 ----- <u>실장·과장</u> ----- ----- <u>실·과</u> ----- -----.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군 본청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단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기획감사실</u>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1010추진단을 둔다. ② <u>실·과·단장</u> 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조(실·과-----) ① ----- ----- <u>기획감사실</u> ,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창조정책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를 --. ② <u>실장·과장</u> ----- -----. 1. ~ 3. (현행과 같음) 4. 창조정책과장 가.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나. 창조도시 전략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다. 인구증가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라. 도시디자인 및 경관에 관한 사항 마. 승강기산업벨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바. 자전거 도로 개설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p>4. 재무과장 가. ~ 마. (생략) <u><신설></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사항</p>
<p>5. 민원봉사과장 가. ~ 다. (생략) 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사항</p>	<p>6. (현행 제5호와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u><삭제></u></p>
<p>마.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사항</p>	<p>라. (현행 마목과 같음)</p>
<p>6. 경제과장 가.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단지에 관한 사항 나.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사항 다. 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p>	<p>7. (현행 제6호와 같음) 가. 사회적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나.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다. 상공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p>
<p>로개척에 관한사항 라. 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사항</p>	<p>라. 투자, 통상협력, 국내외 시장 및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마.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p>
<p>7. 문화관광과장 가. 문화예술 및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광진흥, 관광지 개발 및 관광시설에 관한사항</p>	<p>8. (현행 제7호와 같음) 가. 문화예술 및 축제에 관한 사항 나. 관광 및 문화재보존에 관한 사항</p>
<p>다. 관광홍보·축제 및 관광행사에 관한 사항</p>	<p>다. 스포츠레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라. 체육진흥 및 여가문화에 관한 사항</p>	<p>라.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마. 수송대관광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바.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u>8. 산림환경과장</u> 가. ~ 다. (생략) 라. <u>환경관리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u> 마. <u>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바. <u>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사. <u>금원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다만, 수탁기간동안에 한한다)</u></p> <p><신설></p>	<p><u>9. 산림녹지과장</u>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임산물 및 화강석 육성</u>----- -- <삭제> <삭제></p> <p>마. (현행 사목과 같음)</p> <p><u>10. 녹색환경과장</u> 가. <u>환경관리 보존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u> 나. <u>폐기물 관리, 자연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다. <u>수질, 토양의 개선 및 보전에 관한 사항</u> 라. <u>온실가스 저감 및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u></p>
<p><u>9. 건설과장</u> 가. <u>건설행정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u> 나. <u>토목공사 및 도로에 관한 사항</u> 다. <u>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u></p> <p><신설></p>	<p><u>11. 건설교통과장</u> 가. <u>건설행정</u>----- 나. (현행 다목과 같음) 다. (현행 나목과 같음) 라. <u>교통행정 및 운수에 관한 사항</u></p>
<p><u>10. 도시건축과장</u> 가. ~ 다. (생략)</p>	<p><u>12. (현행 10호와 같음)</u> 가. ~ 다. (현행과 같음)</p>
<p><u>11. 재난관리과장</u> 가. ~ 라. (생략)</p>	<p><u>13. (현행 11호와 같음)</u> 가. ~ 라. (현행과 같음)</p>
<p><u>12. 1010추진단장</u></p>	<p><삭제></p>

현행	개정안
제3장 직속기관	제3장 직속기관
<p>제7조(소관사무) (본문 생략) 1. ~ 14. (생략) <신설> <신설></p>	<p>제7조(소관사무) (본문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15. 농기계 임대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귀농인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p>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p>제4절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p> <p>제20조(설치) ① 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승대관광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를 둔다.</p> <p>②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는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0-3번지에 둔다.</p> <p>제21조(소장) 수승대관광지관리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2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p> <p>1. 수승대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p> <p>2. 수승대 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4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 비율을 조정하고, 행정수요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2).

- 4급 이상 : 1% 이내(현행) → 1% 이내(현행과 같음)
- 5급 : 6% 이내(현행) → 6.2% 이내(조정 : 증 0.2%)
- 6급 : 28% 이내(현행) → 28.2% 이내(조정 : 증 0.2%)
- 7급 : 31% 이내(현행) → 31% 이내(현행과 같음)
- 8급 : 25% 이상(현행) → 25% 이내(현행과 같음)
- 9급 : 9% 이상(현행) → 8.6% 이상(조정 : 감 0.4%)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5급 정원 : 증 1명
 - 현행 : 29명(본청10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 조정 : 30명(본청11명, 의회3명, 직속기관1명, 사업소3명, 읍1명, 면11명)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 감 2명
 - 현행 : 478명(본청217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31명, 읍33명, 면129명)
 - 조정 : 476명(본청221명, 의회5명, 직속기관63명, 사업소27명, 읍32명, 면128명)

- 일반직+ 지도직 6급 상당 : 증 1명
 - 현행 : 14명{직속기관(기술센터) 14명}
 - 조정 : 15명{직속기관(기술센터) 15명}
- 연구직 : 증 1명
 - 현행 : 3명{직속기관(기술센터) 2명, 사업소1명}
 - 조정 : 4명{직속기관(기술센터) 3명, 사업소1명}
- 지도직 : 감 1명
 - 현행 : 18명{직속기관(기술센터) 18명}
 - 조정 : 17명{직속기관(기술센터) 17명}
- 기능직 : 증감없음
 - 현행 : 76명(본청40명, 의회6명, 직속기관4명, 사업소14명, 읍5명, 면7명)
 - 조정 : 76명(본청43명, 의회6명, 직속기관5명, 사업소11명, 읍4명, 면7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가 소요액 79,777,590원(기구 및 정원조정)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별표로 갈음
- (2) 입법예고(2010. 10. 25 ~ 2010. 11. 14) 결과 : 1건 접수(반영 1건)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입법예고기간 : 2010. 10. 25 ~ 2010. 11. 14

의견 제출자	제출의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거창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1명 증가 ○ 별표3 정원관리기 관별 직급별 정원 읍 6급이하 정원 31명 ⇒ 3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2담당이 축소되어 업무과중 및 민원불편이 예상됨으로 1명 증원 ⇒ 면 1명 감원 	반영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1.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u>6.2% 이내</u>	<u>28.2% 이내</u>	31% 이내	25% 이내	<u>8.6% 이상</u>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15%;">4급 이상</th> <th style="width: 10%;">5급</th> <th style="width: 10%;">6급</th> <th style="width: 10%;">7급</th> <th style="width: 10%;">8급</th> <th style="width: 10%;">9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6%</u>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28%</u>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1%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9%</u>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u>6%</u> 이내	<u>28%</u> 이내	31% 이내	25% 이내	<u>9%</u> 이상	<p>[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구분</th> <th style="width: 15%;">4급 이상</th> <th style="width: 10%;">5급</th> <th style="width: 10%;">6급</th> <th style="width: 10%;">7급</th> <th style="width: 10%;">8급</th> <th style="width: 10%;">9급</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비율</td> <td style="text-align: center;">1%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6.2%</u>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28.2%</u>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31%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25%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u>8.6%</u>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u>6.2%</u> 이내	<u>28.2%</u> 이내	31% 이내	25% 이내	<u>8.6%</u>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u>6%</u> 이내	<u>28%</u> 이내	31% 이내	25% 이내	<u>9%</u> 이상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u>6.2%</u> 이내	<u>28.2%</u> 이내	31% 이내	25% 이내	<u>8.6%</u> 이상																							
<p>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기능직공무원 (생략)</p> <p>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생략)</p> <p>4. 별정직공무원 (생략)</p>	<p>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p> <p>2. 기능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p>4. 별정직공무원 (현행과 같음)</p>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u>6.2% 이내</u>	<u>28.2% 이내</u>	31% 이내	25% 이내	<u>8.6% 이상</u>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9% 이내	21% 이내	24% 이내	31% 이내	15% 이상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8% 이내	92%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70% 이내	30% 이상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45	282 (274)	14	124 (122)	60 (57)	64 (65)	42 (49)	37 (39)	146 (147)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계	510 (511)	235 (230)	8	65	17 (16)	48 (49)	30 (34)	33 (34)	139 (140)
4급	1	1							
4~5급	3	2		1		1			
5급	30 (29)	11 (10)	3	1		1	3	1	11
6급 이하 계	476 (478)	221 (217)	5	63	17 (16)	46 (47)	27 (31)	32 (33)	128 (129)
일반직+지도직 계	19 (18)			19 (18)	19 (18)				
5급 상당	4			4	4				
6급 상당	15 (14)			15 (14)	15 (14)				
일반직+연구직 계 (6급 상당 이하)	2	2							
별정직 계 (6급 상당 이하)	16	1		15		15			
연구직 계 (연구사)	4 (3)			3 (2)	3 (2)		1		
지도직 계 (지도사)	17 (18)			17 (18)	17 (18)				
기능직 계	76	43 (40)	6	5 (4)	4 (3)	1	11 (14)	4 (5)	7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5
----------	-----------

제출일자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기본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 현행 「거창군세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주민들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세목,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송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나. 제2장 부과징수 : 군세의 수납, 군세환급금 통지,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
- 다. 제3장 체납처분 :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유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 라. 제4장 보칙 :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2.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세 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배달증명 우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 거창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군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제5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금은 그 연장 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군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 군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세 등의 열람) ①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전산 출력물을 포함한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65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내)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

2. 체납된 군세의 세목, 납기, 체납(결손처분)금액, 결손처분일

③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④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 징수유예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군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①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군세의 수납)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은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①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처리) ①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3.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균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균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② 제1항에 따라 균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연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액의 권리 존속기간
2.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②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①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군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개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인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색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색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라도 영업 중으로 한정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경우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①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① 군수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면허분등록면허세, 균등분주민세,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는 제외한다)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①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 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②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압류재산현황·공매대행·직접매각 등을 조회하여 압류 후 2개월 이내에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않은 압류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체납된 군세 본세(가산세를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공매가능한 재산은 신속히 직접매각 또는 공매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 나.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채납처분비·가산금·군세 및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납자에게 교부한다.
6.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 채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채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 제39조(채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격이 채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② 채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채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관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채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채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 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 중지기간중 균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채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채납처분 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①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채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균세로 하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균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1.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① 회생계획안이 확정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군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 체납이 발생한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균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 회생계획에 포함된 균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 부터 인가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①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균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균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또는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균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균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4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정은 문서로 한다.

제5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청구인·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1조(심사·의결)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6
----------	-----------

제출일자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도한 납세·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법으로 분법('10.3.31 공포, '11.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 체계에 맞추어 현행 군세조례 중 개별세목 분야를 군세조례로 분리하여 개정하고,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16개→11개)에 따른 세목체계 개편사항과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장 총칙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제2장 담배소비세 :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 비치·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다. 제3장 주민세 : 균등분·재산분의 세율 및 재산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라. 제4장 지방소득세 : 소득분·종업원분의 세율 및 종업원분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마. 제5장 재산세 : 세율, 중과대상지역,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과세특례, 납기,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
 - 종전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함
- 바. 제6장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부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통합하여 자동차세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2010. 10. 22.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거창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거창군세 기본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 법인

구분	세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①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2절 종업원분

제10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4. 선박

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시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시시당 세액	배기량	시시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8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10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이하	19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초과	24원	2,000cc 초과	220원

2. 그 밖의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3. 승합자동차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 :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5. 특수자동차

구 분	영업용	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6. 3륜 이하 소형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군수는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
 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7
----------	-----------

제출일자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사항을 반영하는 등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비과세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현행 감면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 등을 삭제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9조 이관)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20조 이관)
-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4조 이관)
- 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42조 이관)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4조 이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감면일몰, 전방조종차량 감면조항 지특법 제67조 이관)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법 부칙 개정)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31조 이관)
-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3조 이관)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16조 이관)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4조 이관)
-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지특법 제81조 이관)

나. 기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세목통합 감면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안 제3조)
-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5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6조)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안 제10조)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1조)

다. 감면대상 추가 :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다. 그 밖의 명칭변경

-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2. ~ 11. 1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거창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받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아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칙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8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 민원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에 맞게 수수료의 명칭과 징수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과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 1의2).

○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 삭제

-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 삭제(관리대장 사본 교부)

○ 수수료 금액 및 명칭 변경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법인 5,000원/개인 3,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800원)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기간연장) 신청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24,000원)

⇨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4,000원)

4)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5)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컬러 발급의 경우)

7) 자동차등록원부(관외)(1,000원) ⇨ 자동차등록원부(관외)(2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6조, 별표 3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0. 29. ~ 2010. 11.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기 등록 완화규제 1건(제6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삭제		
(1)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삭제		
3. 부동산에 관한 사항			2. 부동산에 관한 사항		
(5)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 증)재교부 (가)법인 (나)개인	1건 1건	5,000 3,000	(5)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 증)재교부	1건	800
4. 지방세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	1건	3,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
6.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24,000	(1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
7.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8. 환경 등에 관한 사항			7. 환경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 치 허가(신고)	1건	10,000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 치 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 치 변경허가(신고)	1건	5,000	(2)소음·진동·배출시설 설 치 신고	1건	5,000
9. 건설 등에 관한 사항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0.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9.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시	1필지 “	1,000 1,500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컬러 발급의 경우	1필지 “	1,000 1,500

현행			개정안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11.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2.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3.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2.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13.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의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기준	금액	구분	기준	금액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1,000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200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 신상에 관한 사항			
(1) 이장재직사실확인	1통	800	
(2) 재직(퇴직,경력)증명	1통	1,000	
(3) 부양가족사실확인	1통	1,000	
(4) 독자사실확인	1통	1,000	
(5)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사실확인	1통	1,000	
2. 부동산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확인 ※ 동일필지 공시일자별 추가	1필지	800 200	
(2) 개별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3) 공동주택 가격확인 ※ 동일주택 공시일자별 추가	1주택	800 2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 인 (나) 개 인	1건 1건	30,000 20,000	
(5) <u>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u>	<u>1건</u>	<u>800</u>	
(6)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20,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3. 지방세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4.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2)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	
5.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2)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31,0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4) 석유판매업(일반,용제대리점) 등록	1건	20,000	
(5)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20,000	
(6)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등) 신고	1건	20,000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대리점,주유소,판매소)등록	1건	20,000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0	
(9)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1건	51,000	
(10)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신청	1건	24,000	
(11)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u>재발급</u> 신청	1건	<u>4,000</u>	
(12)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1건	5,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6.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			
(1) 유원시설업 영업허가			
(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40,000	
(나)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20,000	
(다) 기타 유원시설업 신규허가	1건	20,000	
(라) 기타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	
(3)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허가, 등록, 신고)	1건	20,000	
(4)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게임제공업(일반,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변경(허가, 등록, 신고)	1건	10,000	
(5)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6)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7)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1건	31,000	
7. 환경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u>허가</u>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u>신고</u>	1건	5,000	
8. 건설 등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5,000	
(2)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점용, 사용)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3) 소하천점 사용기간 연장신청	1건	1,300	
(4) 소하천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5,000	
(5) 소하천 준공검사 신청	1건	5,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9.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1) 공(시)영주택분양금납부 증명	1통	800	
(2) 표준주택 설계도면	1호	1,5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	
(4) 건축물대장 무등재 증명	1건	1,000	
(5)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필지	800	
(6)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1,000	
(7)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1필지	1,000	
(8)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필지	1,000	
(9) 체비지 분할 신청	1건	1,000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건	1,000	
(11) 도시계획사업허가 신청	1건	1,000	
(1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1,000	
(13) 토지사용(체비지) 승락	1건	1,000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1필지	1,000	
※ <u>컬러 발급의 경우</u>	“	1,500	
10. 농·수·축산 등에 관한 사항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건	800	
(2) 내수면어업 허가 및 면허신청	1건	10,000	
(3) 내수면어업 면허연장허가 신청	1건	5,000	
(4) 유해어업 사용허가	1건	5,000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11.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1) 의료기관 관련 신고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100,000	
(나)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20,000	
(마)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0	
(2) 치과기공소 관련 신고			
(가) 치과기공소 인정	1건	20,000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3) 안경업소 관련 신고			
(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8,000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8,000	
(4) 위생관련 영업신고			
(가) 위생처리업 신고	1건	22,000	
(나)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2,000	
(다)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29,000	
(라)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7,000	
(마)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신고	1건	14,000	
(바)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	
12.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1) 급수공사 대행업자 검사신청	1건	4,000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1건	2,000	

구 분	기준	금액	비고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방서 교부 (가) 신 규 (나) 갱 신	1건 1건	4,000 2,000	
(4) 급수공사 설계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2,000 4,000 설계금액의 100분의1	
(5) 시공자재 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6) 준공검사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7) 수도계량기 시험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000 2,000	
(8) 정수처분 해제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2,000 4,000	
13. 그 밖의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건	500	

[별표 1의 2]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가족관계증명서	1통	500	
3) 제적등본	1통	500	
4) 제적초본	1통	300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6) 토지(임야)대장	1통	300	
	추가 1장당	10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관내)	1통	200	
9) 자동차등록원부(관외)	1통	<u>200</u>	
10) 건설기계등록원부(관내)	1통	300	
11) 건설기계등록원부(관외)	1통	1,000	
12)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3) 지방세과세증명서	1통	500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69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징수촉탁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금을 촉탁받아 징수한 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촉탁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촉탁교부금을 받음으로써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함(안 제1조).

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7호 신설).

○ 지급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 지급기준 :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다. 체납액 징수에 따른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세입금’의 범위를 군세와 세외수입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7조).

○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함

○ 읍·면 공무원의 관련서류 첨부 일괄신청에 관한 현행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은 시·군 공무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경우에 대한 절차로서 삭제함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제77조, 제80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6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7,500천원)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0. 29. ~ 11.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포상금”을 “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으로, “결정에 의하여”를 “결정으로”로, “납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으로, “세입금”을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으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채납발생일로부터”를 각각 “채납발생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으로, “필하지”를 “마치지”로, “필하였을”을 “마쳤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를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를 “「공무원제안 규정」 등에 따라”로, “조례에 의한”을 “조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으로 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급기준에 의한”을 “지급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세입징수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5인”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지방세 징수부서”를 “세입 징수부서”로, “비치하고”를 “갖춰 두고”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군수가”를 “읍·면장이”로 한다.

①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제7조에 따라”로, “받은 때”를 “받은 경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포상금”을 “포상금의 지급”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따르되”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를 “예금계좌로 이체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위,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행정착오에 의하여”를 “행정착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u>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u> ---- ----- -----.</p>
<p>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u>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u>포상금</u>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p> <p>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p> <p><신 설></p> <p>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u>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u>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제2조(지급대상) ① ----- ----- <u>사람</u>----- <u>범위</u>----- <u>거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u>-----.</p> <p>1. ----- -----</p> <p>2. ----- -----</p> <p>3. ----- -----</p> <p>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p> <p>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 <u>결정으로 납부기한</u>----- ----- -----.</p>

현행	개정안
<p>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u>미등기 재산의 취득</u>”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u>필하지</u>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u>필하였을</u>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p>	<p>4. ----- (“<u>미등기 재산의 취득</u>”이란 ----- <u>마치지</u> ----- <u>마쳤을</u> -----)</p>
<p>5. <u>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u>로부터 1년이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p>	<p>5. <u>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u>부터 -----</p>
<p>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u>공무원제안규정</u>」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u>조례에 의한</u>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p>	<p>6. -----, 「<u>공무원제안규정</u>」 등에 따라 ----- <u>조례에 따른</u> -----.</p>
<p><신 설></p>	<p>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p>
<p>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u>자</u>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u>경우에 한하여</u> 지급한다.</p>	<p>② ----- <u>사람</u> ----- <u>경우에만</u> -----.</p>

현행	개정안
<p>제4조(지급한도액) <u>제3조제1항제1호</u> 내지 <u>제6호의 규정</u>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u>지급기준에 의한</u>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p> <p>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p>	<p>제4조(지급한도액) <u>제3조제1항제1호</u>부터 <u>제5호까지</u> 및 <u>제7호에 따른</u> --- ----- --.</p> <p>1. <u>지급기준에 따른</u> ----- ----- -----</p> <p>2. ----- ----- ----- -----.</p>
<p>제5조(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u>세입징수포상금</u>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거창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u>5인</u>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으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제2조의 규정</u>에 의한 지급대상</p> <p>2. <u>제3조의 규정</u>에 의한 지급기준</p> <p>3. <u>제4조의 규정</u>에 의한 지급한도</p> <p>④ (생략)</p>	<p>제5조(거창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u>포상금</u>----- ----- ----- -----.</p> <p>② ----- <u>1명</u>----- <u>5명</u>----- ----- ----- -----.</p> <p>③ ----- --.</p> <p>1. <u>제2조에 따른</u> -----</p> <p>2. <u>제3조에 따른</u> -----</p> <p>3. <u>제4조에 따른</u> -----</p> <p>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조(대장 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p>	<p>제6조(대장 비치) <u>세입 징수부서</u>----- ----- ----- ----- <u>갖춰 두고</u> ----- -----.</p>
<p>제7조(지급신청) <신설></p> <p>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읍·면 공무원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서류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p> <p>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신청하여야 한다.</p>	<p>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 ----- 따른다.</p> <p>④ ----- ----- 읍·면장이 -----.</p>
<p>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p>	<p>제8조(지급) ① --- 제7조에 따라 -- ----- 받은 경우-- ----- ----- 해당 ----- -----.</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에 따르되----- -----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 -----.</p>

현행	개정안
<p>제9조(환수) ① 군수는 <u>허위, 기타</u>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u>당해</u>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u>행정착오에 의하여</u>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p> <p>③ <u>제1항의 규정에 따라</u>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p>	<p>제9조(환수) ① ---- <u>거짓이나 그 밖의</u> -----</p> <p>-----</p> <p>-----</p> <p>-----</p> <p>-----</p> <p>-----</p> <p>② ----- <u>해당</u> -----</p> <p>-----</p> <p>----- <u>행정착오로</u> -----</p> <p>-----</p> <p>③ <u>제1항에 따라</u> -----</p> <p>-----</p> <p>-----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p> <p>제65조에 따른 -----</p> <p>-----</p> <p>-----</p>
<p>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시행규칙) ----- <u>시행에 필요한</u> -----</p> <p>-----</p>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70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지와 관련하여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군수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장(제32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제17조, 제18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
- 「우편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에 반영(52,500천원)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10. 10. 8. ~ 2010. 10.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0장(제3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

제32조(실비변상)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9장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24조(구성) ~ 제31조(수당 등) (생략)	제24조(구성) ~ 제31조(수당 등)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장 도로명주소의 고지
<신설>	제32조(실비변상) 군수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생략)	제33조(시행규칙) (현행 제32조와 같음)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71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상 특정기관의 설립과 목적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만 ‘공공기관’으로 인정하고 군비를 출연할 수 있으나, 거창군장학회는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창군장학회의 목적과 설립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공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의 등기 명칭에 따라 제명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장학회의 설립과 목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지역인재의 발굴·육성 및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회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함

다. 장학회의 정관과 임원, 이사회 및 사무국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의회회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함
○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하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따로 정하도록 함

라. 장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과 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장학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등 장학 사업에 관련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거창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함

마.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과 공유재산의 지원,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공무원의 인력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상황, 재정지원 등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2011년 본예산 확보(60,000천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9. ~ 11. 1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 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장학회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되, 거창군수, 거창군 의회의장,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이사회) ① 장학회에는 그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①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72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3.3)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군수가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3조).

- 객관성·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다.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 체결하여야 하는 협약과 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협약에는 그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5. ~ 10. 30.)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군수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에는 협약의 목적과 기간, 업무의 범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및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73
----------	-----------

제출연월일	2010. 11. 16.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정이유

-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로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촌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안 제3조)
- 거창군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
-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안 제9조)
 -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후계인력육성, 여성농업인단체 육성지원
 - 영농현장 환경조성,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촉진 등
- 여성농업인 교육강화(안 제10조)
-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안 제11조)
-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농업인 육성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한부모가족법」 제4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4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나. 예산조치 : 사안발생 시 추경예산으로 확보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0. 10. 25. ~ 2010. 11. 13.)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거창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농업인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는 위촉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시행계획 수립

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여성농업인 지원사업)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업인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
5. 품목별 경영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6. 여성농업인을 위한 영농현장의 환경조성사업 추진
7. 여성농업인단체가 실시하는 상담 등 활동 지원
8. 여성농업인 지위향상과 사회참여의 촉진
9. 여성농업인과 도시소비자의 교류활동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농업인 교육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6. 여성농업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2.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3.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지원
5. 농업인 양성 평등을 위한 농정관련 각종 위원회의 여성농업인 위촉 확대
6.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외국에서 이주한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4. 귀농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교육
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